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3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산 업 교 육 진 흥 및 산 학 연 협 력 촉 진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 주 호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디지털 대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계약학과를 통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학과의 정원, 학생선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

- 1) 공동계약 형태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는 기업단위 학생선발과 기업(산업체등)의 학생선발 과정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전형을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2) 기업의 채용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약학과의 모집규모(정원)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

나.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확대 및 정원내 모집근거 마련(안 제8조제7항, 제8항 신설)

- 1)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(법 제8조제1항제1호)의 학생정원을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의 100분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다.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완화(안 제8조제9항)

- 1) 비수도권 대학의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한해 산업체의 경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

라. 계약정원제 운영(안 제8조의3 신설)

- 1)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,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학과의 정원을 기존 일반학과 내에 추가·운영(계약정원제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예정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그 계약학과등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때에는 학생 선발 방법을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⑥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그 산업교육기관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체등의 채용여건 및 고용환경 변화가 있는 때에는 매 입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「첨단(신기술)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」 별표 1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양

성을 위해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그 계약학과등의 학생정원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정원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이 첨단(신기술)분야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과 산업교육기관 간 계약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감된 부담금을 제2항제6호의 학생의 납부금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제7항을 제10항으로, 제8항을 제11항으로,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.

제8조제12항(종전의 제9항) 중 “제8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계약정원제 운영)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학과등을 설치하지 않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(학부)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

(이하 “계약정원제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계약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 다만, 학생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(학부)의 입학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·운영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·운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그 계약학과등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때에는 학생 선발 방법을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<u>⑥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그 산업교육기관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 5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체등의 채용여건 및 고용환경 변화가 있는 때에는 매 입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</u> <u>⑦ -----</u> <u>-----</u>
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「초·중등교육법	

시행령」 제51조와 「고등교육
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 및 제
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
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
으로 본다. 다만, 계약학과등의
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
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
계약학과등의 경우: 해당 학년
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
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
20

2. (생 략)
<신 설>

-----.

1. -----

20. 다만, 법 제2조제2호다목
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「첨
단(신기술)분야 모집단위별
입학정원 기준 고시」 별표 1
과 관련성 있는 분야의 인재
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등을 설
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
으로 한다

2. (현행과 같음)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
조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교육
기관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
계약학과등을 설치·운영하는
경우, 그 계약학과등의 학생정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

⑫ ----- 제 11 항 -----

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-----.

제8조의3(계약정원제 운영) ① 법

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첨단분야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학과등을 설치하지 않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(학부)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(이하 “계약정원제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계약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 다만, 학생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(학부)의 입학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262